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92

발의연월일: 2025. 1. 16..

발 의 자:신장식·김준형·차규근

김선민 · 서왕진 · 민병덕

김재원 • 이해민 • 이기헌

윤준병 • 이수진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기반할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권고·기각·각하·타 구제절차 이송·수사의뢰 등 모든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,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해옥.

이에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관행하고,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전

원이 심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(안 제1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"을 "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의결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회부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3조(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)	제13조(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	②		
회의는 <u>구성위원 3명 이상의</u>	<u>구성위원 전원의 출석</u>		
<u>출석과 3명 이상</u> 의 찬성으로	과 출석위원 전원		
의결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소위원회에서</u>		
	심의된 안건이 의결이 되지 아		
	<u>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회</u>		
	<u> 부한다.</u>		